

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20.02.27. 개정 2023.08.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겸직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이 외부의 타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영리업무에서 제외

제4조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겸직신청)

- ①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영리기관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2에 따른 연구기반을 통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7에 따른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 ③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임원,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각종 기관의 비상근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 비상근 위원 등은 겸직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겸직허가절차 및 허가기준의)

- ① 겸직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허가신청서[별지 1]와 서약서[별지 2]를 작성하여 겸직대상기관장의 겸직허가요청 공문과 함께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08.25.>
- ②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겸직허가기간의 적절성, 겸직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겸직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겸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지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교원의 직무상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겸직허가의 취소)

- ①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겸직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겸직기간 중이라도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총장은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8.25.>

제9조 (겸직기간)

- ① 겸직기간은 겸직대상기관의 정관에 명시된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은 겸직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수창업의 경우 최초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운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 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아 다음해 1월말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8.25.>
1.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 ② 교무처장은 교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8.25.>

제11조 (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총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타 기관에서 겸직한 경우
3.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2조 (직무상 책임)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본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에 따른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타 기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겸직 허가 신청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당수업시간		보 직 명	
겸 직 사 항	겸직기관명			
	예정 직위명		직무내용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상근여부	상근()/비상근()	근무시간	
	보수지급여부	무급()/유 급()	월보수액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기업체의 겸직허가 요청 공문 1부 2. 해당기관 정관 1부 3.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1부 4. 서약서 1부				
※ 교수창업 연장신청의 경우 사업운영 실적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2]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겸직기관명) (예정직위)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직 수행 중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기업체의 손실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3]

겸 직 허 가 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겸직기관 및 직위 :
5. 겸직기간 :

해전대학교 「교원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겸직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전대학교 총장 (직인)

귀하

[별지 4]

겸직 종료 신청서

인 적 사 항	소속학과명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겸 직 사 항	겸직기관명			
	직 위 (급)		직무내용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겸직종료일			
	종료사유			
<p>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을 종료하고자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혜전대학교 총장 귀하</p>				